

[별지 5호 서식]

기 관 명

문서번호 (전화번호)

시행일자

수신

발 신 인

참조

제목 공인사고보고서

1. 사고인영	
2.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	
3. 사고내용	
4. 사고후의 처리 전말	
5. 기타	

210mm × 297mm

신문용지 54g/m²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

조례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(적용범위) 지방공무원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지방고용직공무원(이하 “고용직공무원”이라 한다)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2 조(임용권자) ①고용직공무원은 구청장이 임용한다.

②제1항의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, 전보, 휴직, 복직, 면직, 파면, 해임, 정직,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.

제 3 조(신규임용) ①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

은 별표의 직명에 의한다.

②고용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미리 업무수행능력 기타 적격성을 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검정방법은 임용권자가 정한다.

③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은 14세이상 20세까지로 한다.

④고용직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·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4 조(전보임용) 고용직공무원은 동일직명에 한하여 전보임용 할 수 있으며, 임용권자를 달리 하는 기관으로의 임용은 전출·입의 방법에 의한다. 이 경우에 전보임용 원칙 전보의 제한 및 전출·입절차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

준용한다.

제5조(방법원의 파견) 임용권자는 소속 고용직공무원중 방법원을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근무상한연령) ①고용직공무원의 직명별 근무상한연령은 별표와 같다.

②고용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과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과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퇴직 된다.

제7조(당연퇴직) 고용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.

제8조(면직)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시켜야 한다.

1. 신체,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
2. 직제,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
3. 천재지변 또는 전시,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

제9조(휴직)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
1.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떨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
2.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, 다만,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한다.

제10조(병역복무휴직자의 결원보충) ①고용직공무원이 제9조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기간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정원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·보건소 및 동사무소 단위로 하나의 정원관리기관(이하 “휴직자정원관리단위”라 한다)으로 하여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별정원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조정 임용할 수 있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

복직된 후 휴직자정원관리단위기관의 고용직공무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보며, 제2항의 임용권자는 기관간의 혼원을 조정하여야 한다.

제11조(징계) ①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한다. ②고용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중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직명삭제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으로서 직명이 폐지된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직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③(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 조치) 제2항의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1992.5.10까지 연장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[별표]

서울특별시마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, 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표

1종	2종	경노무	근무상한연령
방법원			53세
		사환	23세

비고: 방법원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.

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내의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,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가스사업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그